

IMO 제92차 해사안전위원회(MSC)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IMO 제92차 해사안전위원회
(92nd Session of Maritime Safety Committee)
- 기간/장소 : '13. 6. 12~6. 21(10일간)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참 석 자 : KST 해사안전연구센터 조민철
KST 정부대행검사실 이운상

II. 주요 의제 목차

1.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2. 전문위원회 보고서 검토
 - 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 방화전문위원회(FP)
 - 무선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COMSAR)
 -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BLG)
 - 복원성·만재흡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
 -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FSI)
 -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
 - 선원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STW)

III. 주요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1.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 1974 SOLAS 협약 및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 SOLAS III/19 규칙 - “비상 훈련 및 연습”

- Costa Concordia호 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로서, 여객이 4시간 이상 승선하는 여객선은 출항 전 혹은 즉시 소집훈련을 시행하도록 SOLAS 제III장 19.2.2 및 19.2.3규칙(비상 훈련 및 연습) 개정안은 원안대로 채택함
- 선내의 밀폐된 구역에 대한 진입 및 구조에 대한 훈련을 최소 2개월에 한 번씩 갖도록 하는 SOLAS 제III장 3.3 내지 3.6항에 대한 개정안은 북한이 제출한 MSC 92/3/10 문서의 내용을 다수의 국가들이 지지하여, 해당 문서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SOLAS 제III장 19.3.6.2,3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채택하였음
“3.6.2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밀폐구역 내의 대기 분위기를 계측하기 위한 장비의 점검 및 사용”
- 또한, 동일한 개정내용을 1994 및 2000 HSC Code, 1979, 1989 및 2009 MODU Code에도 각각 추가 반영하여 채택하였음
- SOLAS XI-1/1규칙 - “인정기관에 대한 위임” RO Code를 강제화하기 위한 SOLAS XI-1/1 규칙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RO Code 각 chapter 번호를 로마자 (I, II, III장)에서 아라비아 숫자 (1, 2, 3장)로 수정하여 채택함
- 상기 협약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 발효 예정

- IMSBC Code(resolution MSC.268(50)에 대한 개정
 - MSC 86차에서 향후 IMSBC Code의 개정에

- 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 IMSBC Code는 2년 간격으로 개정하여, 홀수 년도의 1월 1일 발효한다.(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 개정발효 후, 다음 개정은 2015년 1월 1일 발효)
 - 짝수년도에 개최되는 DSC 전문위원회에서는 회원국 및 국제단체들의 제안에 근거하여 IMSBC 개정안을 개발
 - 개발된 개정안은 DSC 전문위원회의 동의 후에 사무총장이 회원국에 6개월 전에 회람시키고, 회람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확대해사안전 위원회(expanded MSC)에서 검토하고 채택함
 - MSC 채택 후 18개월 후, 즉 홀수년도의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됨
 - 채택된 개정의 발효 1년 전부터 각 국가는 개정된 사항을 자발적으로 미리 적용할 수 있음. 동 기간 중에는 현재 발효된 IMSBC Code의 요건 또는 새로이 개정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IMSBC Code 개정 채택 시 결의서 에는 상기의 사항을 명시한 적용 조항(operative paragraph)을 포함하여야 함
- 동 사안은 2년 간격의 IMSBC Code의 정기적 개정이며, DSC 17차 및 E&T 18(2012. 9월)에서 충분히 검토 및 동의된 사항임
 - 이미 승인된 개정사항들에 대한 일부 editorial 수정 및 노르웨이가 지적한 “Ilmenite” 화물에 대한 밀도 및 적하계수(stowage facctor) 수정 요청을 반영하여 채택함
 - 상기 IMSBC Code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SOLAS 협약 체결국들은 동 개정사항을 2014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미리 적용할 수 있음
- 1979, 1989 및 2009 MODU Code¹⁾ 및 DSC Code²⁾에 대한 개정
- SOLAS III장 개정에 따라 밀폐구역의 진입 및 구조 훈련이 강제화 됨에 따라 SOLAS 협약과 연관된 상기 비강제(non-mandatory) 코드에도 이와 같은 요건을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준비됨
 - 동 사항 관련 1994 HSC Code³⁾ 및 2000 HSC Code 개정안은 지난 MSC 91차에서 이미 승인 (approved)되어 금번 SOLAS III장의 개정과 함께 채택됨
 - 선내의 밀폐된 구역에 대한 진입 및 구조에 대한 훈련을 최소 2개월에 한 번씩 갖도록 하는 SOLAS 제III장 3.3 내지 3.6항에 대한 개정안은 북한이 제출한 MSC 92/3/10 문서의 내용을 다수의 국가들이 지지하여, 해당 문서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SOLAS 제III장 19.3.6.2.3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채택하였음
”3.6.2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밀폐구역 내의 대기 분위기를 계측하기 위한 장비의 점검 및 사용”
또한, 동일한 개정내용을 1994 및 2000 HSC Code에 각각 추가 반영하여 채택하였음

1) The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이동식해양굴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코드(개정되어 적용되는 연도별로 1979 MODU Code, 1989 MODU Code, 2009 MODU Code가 있다.)

2) The Code of safety for Dynamically Supported Craft, 동적지지선박의 안전에 관한 코드

3)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Speed Craft, 고속선의 안전에 관한 코드(개정되어 적용되는 연도별로 1994 HSC Code 및 2000 HSC Code가 있다.)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1972에 대한 개정

- DSC 16차 회의에서 CSC 1972협약의 개정안을 준비하여 MSC 91차회기에 승인 후 회람되었음. 개정내용은 단위의 통일, ISO 관련규정과의 일치 등을 위한 editorial 성격의 개정임
- 미국의 제안에 따라 개정안의 부속서 IV에 포함된 정의(definition)들을 부속서 1 및 부속서 II로 이동하고 부속서 IV는 삭제함. 또한 승인된 개정안 중 일부 문구수정 사항들을 수정하여 채택함

□ 1966 만재홀수선협약의 1988 의정서에 대한 개정

- MSC 91차 회의에서 RO Code를 1966 만재홀수선협약의 1988 의정서 내에 강제화 시키기 위한 규칙이 승인된 바 있음
- RO Code의 강제화를 위한 SOLAS XI-1/1 규칙 - “인정기관에 대한 위임”에 대한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MSC 91차에서 승인된 문구 외에 사무국에서 새로운 개정안 문구를 제안함
- SOLAS XI-1/1규칙과 동일하게 RO Code의 각 chapter 번호를 로마자 (I, II, III장)에서 아라비아 숫자 (1, 2, 3장)로 수정하여 채택함

□ 인정기관에 대한 코트(RO Code)의 채택

- MSC 91차에서는 RO Code 강제화하기 위해 1974 SOLAS 개정안 및 1988 만재홀수선 의정서 개정안과 함께, RO Code(안)을 승인하였음
- Code의 내용 중 각 “Part”의 번호를 로마자 (I, II, III)로 할 것인지 아라비아 숫자(1, 2, 3)로 할 것인지 꺾쇠괄호로 남겨둠
- 2013년 5월에 개최된 MEPC 65차 회의에서 이미 RO Code를 채택하였으므로, 금번 회의

시에 RO Code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기로 함

- 동 Code 내에서 “mobile offshore unit” 및 “offshore installation” 이라는 단어가 통일되지 않게 사용되었으므로,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SOLAS 상에 정의된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함. MARPOL 협약의 경우 “선박(ship)”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부유정(floating craft)” 또는 “부유 플랫폼(floating platform)”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RO Code의 각 chapter 번호를 로마자 (I, II, III장)에서 아라비아 숫자 (1, 2, 3장)로 수정하여 채택함
- 동 RO Code의 채택과 관련하여,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EU 국가들은 RO Code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EU 법에 따라 EU의 RO 들에게 EU 자체의 요건을 적용시킬 것이라는 선언서(declaration)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일본을 필두로 아국, 미국, 파나마, 싱가포르 등의 비 EU 국가들은 EU 국가가 제출한 선언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명확화(clarification)를 요청하면서 EU의 RO Code의 이행여부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는 statement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EU국가들과 비 EU 국가들은 각각 아일랜드가 주장한 declaration 및 일본 등이 주장한 statement에 동조하였음. 이에 대한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의장은 아일랜드가 주장한 declaration 및 아국 등이 주장한 statement에 대한 동의한 국가들의 목록을 모두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함
- EU는 비 EU 국가들의 이러한 반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EU 내에서 금번 회의결과에 대한 검토 후,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일랜드의 declaration에 동의한 국가(23國)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일본의 statement에 동의한 국가(26國)
앙골라, 안티구아앤바부다, 호주, 바하마, 벨리제, 캐나다, 중국, 쿡아일랜드, 도미니카,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키리바시,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마셜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나마, 대한민국, 러시아, 싱가포르, 탄자니아, 미국, 바누아투

□ 1974 SOLAS의 개정

- (의제개요) 이전 개정 시에 의도하지 않은 BNWAS 설치 소급적용 누락선박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SOLAS V/19.1 규칙(항해설비의 탑재 및 소급적용)의 개정을 제안함
- (논의경과) MSC 81차에서 바하마와 덴마크는 BNWAS의 강제설치를 제안하였음. 그 결과 resolution MSC.282(86)로 BNWAS를 강제(소급)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채택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의제내용)
 - Resolution MSC.282(86)로 개정된 BNWAS 강제설치 규정(V/19.2.2.3 규칙)은 다음과 같음

.3 선교 항해 당직 경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총톤수 150톤 이상의

- 화물선 및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
- .2 2011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첫 번째 검사 시까지 설치;
 - .3 2011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화물선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첫 번째 검사 시까지 설치;
 - .4 2011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 3,000톤 이하의 화물선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첫 번째 검사 시까지 설치; 그리고
 - .5 2011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150톤 이상 500톤 이하의 화물선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첫 번째 검사 시까지 설치

- 그러나 개정 당시, V/19.1 “적용 및 요건”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V/19.1.2규칙에 따라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1.2.2항(RDF 면제 및 GPS 소급설치)과 1.2.3항(AIS 소급설치)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규칙에 완전히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2002년 7월 1일 전에 유효한 1974 SOLAS 협약의 V/11, 12 및 20 규칙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 설비를 계속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규정에 따르면 BNWAS의 소급설치에 해당되는 선박은 2002. 7. 1이후~2011. 7. 1전에 건조된 선박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하지만 최초의 의도는 BNWAS를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소급 적용시키는 것이었음
- 동 문제점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준비하여 Circular letter No.3333으로 2012년 12월 10일 회람시킨 바 있음(즉, 6개월 회람기간 만족) 그러므로 금번 회기에서 개정사항의 채택을 요청함

- 개정사항의 내용은 V/19.1.2규칙에 새로운 .4항 (즉, V/19.1.2.4항)을 추가하고 현행의 V/19.1.2.1항도 개정하는 것임

1) “V/19.1.2.4 be fitted with the system required in paragraph 2.2.3 not later than the dates specified in paragraphs 2.2.3.2 to 2.2.3.5.”

2) “V/19.1.2.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2.2, 1.2.3 and 1.2.4, unless they comply fully with this regulation, continue to be fitted with equipment which fulfill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regulations V/11, V/12 and V/20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in force prior to 1 July 2002.”

○ (논의결과)

- BNWAS 설비의 강제설치에 관한 SOLAS 개정(resolution MSC.282(86))시에 SOLAS V/19.1 “적용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협약의 통일된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므로,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들에 대한 BNWAS의 단계적 설치(phase-in)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동 규정의 발효일(2015년 1월 1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항을 중단(폐선)할 선박들에 대한 BNWAS 설비의 설치 면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채택함

- 1)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여객선은 크기에 상관없이 2016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검사 시까지 BNWAS 설치
- 2)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화물선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검사 시까지 BNWAS 설치
- 3)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 이상 3,000톤 미만의 화물선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검사 시까지 BNWAS 설치
- 4)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1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검사 시까지 BNWAS 설치

2. 전문위원회 보고서 검토

1.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 (DSC) 결과보고

○ 의제내용

- 제17차 DSC 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함

- 1) 1979, 1989 및 2009 MODU Code(이동식 해저자원시추선규약) 및 DSC Code(동력 지원선 코드) 개정 초안의 채택
- 2) ACEP(승인된계속점검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지침서에 관한 CSC(컨테이너안전협약) 회람 초안의 승인
- 3) CSC.1/Circ.138/Rev.1으로 발행될 ‘1972 컨테이너 안전협약의 조화로운 해석과 이행에 관한 개정된 권고’의 개정 초안의 승인
- 4) DSC 17/11/2 문서가, 수반응성 물질이 포함 되었을 경우 소화를 위한 훈련 요건과 관련된 문제의 검토를 위해 STW 전문위원회에 보내 졌음을 주목할 것
- 5) 벌크선 ‘La Donna I’ 선상에서의 매우 심각한 사상자에 관한 사고보고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는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에게 그 문제에 관하여 DSC 18에 코멘트 및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를 FSI 21에 보낸 점을 주목할 것
- 6) 일반적인 보고서의 승인

- 논의내용 및 결과
 - 위원회는 제17차 DSC 전문위원회에서 채택, 승인, 주목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함

2. 방화 전문위원회(FP) 결과보고

- 의제내용
 -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개최된 제56차 방화전문위원회(FP 56)의 보고서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MSC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1) 이너트가스장치에 관한 SOLAS II-2/4.5.5.1.4항 초안과 관련한 “hydrocarbon”이라는 단어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3.19 The Sub-Committee briefly discussed the text of paragraph 5.5.1.4 of draft SOLAS regulation II-2/4, where the word “hydrocarbon” was used for gases which must be prevented from entering the double hull spaces through the IGS. While some delegations expressed their preference for “flammable vapours and gases” instead of “hydrocarbon”, thus providing, in their view, a more general description applicable to, inter alia, chemical tankers, the majority of the Sub-Committee were in favour of the text proposed by the group, as there were a number of products listed in chapter 17 of the IBC that have a flash point exceeding 60° C but, when heated to within 15° C of their flash point, would be considered as flammable; hence the word “hydrocarbon” had to be retained in the text. The Committee is invited to note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 2) 신조선에 관한 이너트가스장치에 관한 SOLAS II-2/4.5.5.규칙 및 16.3.3.규칙 개정 초안을 MSC 93차 채택을 위하여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3) 신조선의 이너트가스장치에 관한 FSS Code 15장 개정안을 MSC 93차에서 채택을 위하여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4) 신조선의 환기덕트(ventilation ducts)의 방화에 관한 SOLAS II-2/3규칙 및 9.7규칙의 개정안을 MSC 93차에서 채택을 위하여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5) 신조선의 갑판적재 화물을 위한 방화요건에 관한 SOLAS II-2/10규칙의 개정안을 MSC 93차에서 채택을 위하여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6) 폭로갑판(weather deck)상 또는 그 상부에 5단 이상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도록 설계되고 건조된 선박의 갑판상 화물구역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이동식 물 모니터의 설계, 성능, 시험 및 승인을 위한 지침에 관한 MSC circular 초안에 원칙적인 승인을 요청함 (동 circular에 대한 최종승인은 MSC 93차에서 SOLAS II-2/10규칙의 개정안의 채택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 7) SOLAS II-2/20규칙(차량, 특수분류, 로로 구역의 보호)의 개정안 및 관련 MSC circular 초안이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에 관한 FSA 연구결과의 Recommendation 2와 일치하며, 이로 인해 해당 recommendation이 달성 되었으며 안전이 상당히 증진되었음을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8) 신조 및 현존 여객선의 탈출분석에 관한 recommendation 검토에 대한 진행상황을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9) 신조 여객선 및 화물선의 기관구역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에 관한 SOLAS II-2/13.4 규칙 개정안을 MSC 93 채택을 위하여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10) A류 기관구역의 탈출트렁크의 방열에 관한 SOLAS II-2/13.4규칙에 대하여 제안된 해석을 FP 57차 회기 시 “Any other business” 에서 논의하기로 FP 전문위원회가 동의한 것을 “note” 해 줄 것을 요청함
- 11) SOLAS II-2/1 및 3규칙 개정안 그리고 수소 및 압축천연가스 자동차를 운송하는 신조선에 대한 요건인 새로운 II-2/20-1규칙(안)을 MSC 93차에서 채택을 위하여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12) 소각기 및 쓰레기 보관 장소에 대한 화재 보호를 위한 검사 및 증서발급이 SOLAS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견해를 endorse해 줄 것을 요청함
- 13) 검사 및 증서 조화제도 하의 검사지침 2011 (resolution A.1053(27))안에 소각기 및 쓰레기 보관 장소의 화재보호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 사항을 포함하도록 FSI 전문 위원회로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함
- 14) SOLAS II-2장, FSS 및 FTP Code에 대한 통일해석에 관한 MSC circular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15) 2000 HSC Code의 통일해석에 관한 MSC circular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16) 기관구역 및 화물펌프룸을 위한 동등한 물기반(water-based) 소화장치의 승인 지침(MSC/Circ.1165)에 대한 해석을 MSC circular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17) SOLAS 협약 및 IBC, IGC Code 통일해석에 관한 MSC circular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18)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SOLAS II-2/17 규칙 및 관련 MSC Circ.1002에 따른 공법 및 위험기관 접근법에 기초한 선박 구조에서 FRP사용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기로 전문 위원회가 동의한 것을 endorse해 주기 바람
- 19) EEBD의 장소에 관한 SOLAS II-2장의 개정안 개발을 진행하지 않기로 전문위원회가 동의한 것을 endorse해 주기 바람
- 20) BLG에서 검토를 요청한 IGC Code의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BLG 17로 보고한 것을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21) DE에서 검토를 요청한 Polar Code 초안의 관련부분을 검토하기 위하여 통신작업반을 구성하고 FP 57에 통신작업반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한 것을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22) BLG에서 검토를 요청한 IGF Code의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BLG 17로 보고한 것을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23) 신조 로로 여객선의 헬리콥터 착륙지역에 관한 SOLAS II-2/18규칙의 개정안을 MSC 93차에서 채택을 위하여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24)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 일반화물선의 안전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수리, 보수 절차 및 항구 정박시의 작업에 의해 야기되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주관청이 ISM Code의 요건을 강력하게 이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봄. 동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치 않음
- 25)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1) 또한 전문위원회의 2014~2015년 2년간의 의제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2) 차기 FP 57차의 잠정의제(안)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3) 의제 23(Work Programme)하의 현재 2년간(2012~2013)의 High-level Action Plan의 Planned output 현황을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논의내용 및 결과

- FP 56의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승인함
- 이너트 가스 시스템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가 제출한 MSC 92/3/9 문서의 코멘트를 반영하여 SOLAS II-2/4.5.5, II-2/16.3.3 규칙 및 FSS Code 제15장 개정안을 수정하여 승인함 (MSC 93 채택 예정)
- IACS는 선박의 환기덕트의 방화성능과 관련한 SOLAS II-2/3 및 II-2/9.7 규칙의 개정안의 적용범위(신조선박, 현존선박) 및 해당 규칙에 사용된 “heat resisting”이라는 용어가 SOLAS에 정의되지 않았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음
SOLAS II-2/3 및 II-2/9.7 규칙의 개정안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FP 56차 회의보고서 (FP 56/23)의 4.10항에 동 개정안이 신조선박에만 적용됨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 하고 사무국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수정반영하도록 함
“heat resisting”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MSC 93에 이에 대한 코멘트 및 제안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 소각기 및 쓰레기 보관 장소가 SOLAS 협약에 따라 검사되고 증명발급이 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견해에 대하여, 동 사항을 FSI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대신에 동 사항에 대하여 관심있는 회원국들에게 이와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 SOLAS II-2, FSS Code 및 FTP Code에 대한 통일해석을 MSC.1/Circ.1456으로 승인함 (휴대식 가스계측 및 탐지장치의 제공, 화물선의 제어장소에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 경보장치의 설치 불요, 기관구역에 관통하는 비상소화펌프의 흡입 및 배출관에 대한 해석, 탱커선의 소화주관의

격리밸브의 위치, 자기발열 산적고체화물에 대한 이산화탄소 시스템 또는 이너트 시스템의 적용, 개방갑판으로 연결되는 비상탈출 해치, 보호되는 구역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 제어 및 경보의 작동, 수직으로 매달린 직물 및 필름의 시험에 대한 통일해석)

- 2000 HSC Code에 대한 통일해석을 MSC.1/Circ.1457으로 승인함(7.4.1.3항 방화재료 관련사항, 7.4.2.3항 하중베어링 구조의 보호 관련사항)
- 기관구역 및 화물펌프룸에 대한 동등한 물기반 소화시스템의 승인에 대한 개정된 지침(MSC/Circ.1165)과 관련한 해석을 MSC.1/Circ.1458로 승인함
- SOLAS 협약, IBC Code 및 IGC Code에 대한 통일해석을 MSC.1/Circ.1459로 승인함 (superstructure 및 deckhouse의 출입문, 공기흡입구 또는 기타 개구의 위치에 관한 통일해석)

3.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BLG) 결과보고

○ 의제내용

- BLG 17(13. 2)의 회의결과로서 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 1)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동시 결정을 조건으로, ESPH 18(제18차 신규화 학물질의 안전 및 오염유해성 평가를 위한 작업반)의 결과에 관한 전문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추인
- 2)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동시 결정을 조건으로, 채택을 위한 관점에서 IBC 코드 개정 초안의 승인
- 3)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동시 결정을 조건으로, IBC 코드 개정 발효 결과로서

개정된 증서에 의한 종전 증서의 대체 시기와 관련된 안내(서)에 관한 MSC-MEPC 회람 초안의 승인

- 4) IGF 코드(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코드) 초안의 개발에 관한 진행상황, 특히 회기내 작업의 진척을 위해 통신작업반이 재설립된 점을 주목
- 5) 채택을 위한 관점에서 MSC 92에 관련 문서 제출이 예상되는 4.27.3 조항의 꺾쇠괄호 안의 “한계 상태 설계”를 주목하면서 IGC 코드(산적액화가스운송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규약) 개정 초안의 승인
- 6)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동시 결정을 조건으로, 2014년 ESPH 작업반의 회기내 회의 개최의 승인
- 7) 일반적인 보고서의 승인

○ 논의내용 및 결과

- 위원회는 제17차 BLG 전문위원회에서 승인, 추인, 주목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함

4. 복원성, 만재흡수선 및 어선안전(SLF) 결과보고

○ 의제내용

- 2013년 2월 18일~22일까지 개최된 제55차 복원성·만재흡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 55)의 보고서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MSC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1) ‘교차침수설비 평가방법에 대한 개정된 권고’에 관한 MSC 결의서의 채택 및 개정된 권고의 채택 전에 수행된 교차침수설비 평가를 위한 계산은 유효하고, 개정된 권고의 채택 이후에 건조된 선박을 위한 계산은 그 뒤를 따라야 함을 주목할 것

- 2) 탱커선의 손상복원성요건 검증을 위한 지침서에 관한 MSC 회람문서 초안의 승인
- 3) MSC 93차에서 채택을 받기 위해 산적위험 화학품 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코드(BCH 코드) 개정 초안의 승인
- 4) MSC 93차에서 채택을 받기 위해 산적위험 화학품 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 코드(IBC 코드) 개정 초안의 승인
- 5) MSC 93차에서 채택을 받기 위해 산적액화 가스 운송 현존선을 위한 코드(EGC 코드) 개정초안의 승인
- 6) MSC 93차에서 채택을 받기 위해 산적액화 가스 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코드(GC 코드) 개정 초안의 승인
- 7) MSC 93차에서 채택을 받기 위해 산적액화 가스 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 코드(IGC 코드) 개정 초안의 승인
- 8) 추후 채택을 위한 관점에서, HSSC 지침의 적절한 개정에 포함하기 위한 FSI 전문위원회에 이관을 위해 ‘검사 및 증서발급의 통일제도(HSSC)에 따른 검사지침, 2011(Res. A.1053(27))’ 개정 초안의 승인
- 9) 사고후 여객선의 생존 레벨 관련 EMSA 및 GOALDS 연구(조사)를 FSA 전문가 그룹으로의 이관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10) A28차에서 채택을 받기 위해 국제협약의 적용에 있어 국가톤수(national tonnage)의 사용에 관한 총회 결의서 초안의 승인
- 11) 극지방 코드(Polar Code) 제3장 및 제4장의 제안된 본문이 추가 검토 및 SLF 56차에 보고를 위해 IS 및 SDS 통신작업반으로 넘겨진 것과 관련된 문제에 주목할 것
- 12) 전기 경사계 성능기준에 관한 MSC 결의서 초안의 채택

- 13) 1977 어선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국제 협약관련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서의 각 체약국의 수탁자(IMO)에 의한 어선 숫자 계산 절차에 관한 MSC 결의서 초안의 채택
- 14) 위험하고 유해한 액체 물질의 제한된 양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OSVs를 위한 제안된 손상복원성 기준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취한 조치를 추진하고, 검토를 위해 BLG 18에 언급된 본문을 주목할 것
- 15) 시간제약으로 인해 SDS 작업반이, BLG 16 및 BLG 17에 의해 SLF 전문위원회에 언급된, 적절한 충돌예방을 제공하는 가스연료 탱크를 위한 위험기반 거리 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지 못했음에 주목하고, 또한 전문위원회가 회원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 이 문제에 관한 코멘트 및 제안을 SLF 56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에 주목할 것
- 16) IGC 코드 개정초안의 승인과 함께 IGC 코드 초안 제2장의 2.2부터 2.7까지의 제안된 수정안 검토
- 17) 일반적인 보고서의 승인
 - (1) 또한 전문위원회의 2014~2015년 2년간의 의제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2) SLF 56 차의 잠정의제(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3) 의제 23(Work Programme)하의 현재 2년간(2012~2013)의 High-level Action Plan의 Planned output 현황을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논의내용 및 결과

- 위원회는 SLF 55의 보고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견 없이 승인함

5.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FSI) 결과보고

○ 의제내용

- FSI 전문위원회는 FSI 21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요청함
 - 1)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증서 및 서류목록 Circular 초안에 승인
 - 2)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증서는 유효하여야 하고 관련 협약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승인된 전자적인 수단으로 날인(서명 또는 직인)된 증서도 원본 또는 진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FAL 38에 권고
 - 3) GISIS를 통한 통보 및 회람에 관한 총회 결의서 초안 승인
 - 4) GlobalReg 기준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FSI 21/3/4로 제안된 방법, 진행방향 및 원칙에 대한 원칙적 동의
 - 5)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GlobalReg의 안전 기준에 대한 검토를 FSI 22가 시행토록 지시
 - (1) 24미터 이상 여객선에 대한 추가안전기준 개발
 - (2) 최대 적용 길이 규정
 - (3) GlobalReg는 현행 기국 및 지역 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안 됨
 - (4) MSC 93에 보고를 위한 검토 시간계획 작성
 - 6) 다음 선박의 사고결과보고서 및 분석결과/코멘트를 관련 전문위원회에 전달
 - (1) Commodore Clipper ⇒ FP, DE, SLF
 - (2) Lisco Gloria 및 Pearl of Scandinavia ⇒ FP, DE
 - (3) CMA CGM Christophe Colomb ⇒ DE
 - (4) Deepwater Horizon ⇒ DE, FP, SLF, STW
 - 7) “사고조사코드(Res.MSC.255(84)) 이행에 있어 조사관 지원을 위한 지침”에 대한 총회 결의서 초안 승인

- 8) 해양사고 정보 IMO 제출을 위한 MSC
 - MEPC.3/CIRC.3(보고규정) 개정안 승인
 - 9) SOLAS Reg.12/3, 12/7 및 12/11 적용과 관련한 MSC Circular 초안 승인
 - 10) HSSC 검사지침 개정안 및 관련 총회결의서 초안 승인
 - 11) III Code 관련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목록 및 관련 총회결의서 초안 승인
 - 12) SOLAS 및 MARPOL 협약에 따른 계약일, 용골거치일 및 인도일에 대한 통일해석 승인
 - 13) 일반화물선 안전과 관련한 위험통제방안 19(확대검사) 및 20(PSC 검사관 교육)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따라서 회원국 및 국제 기구가 FSI 22에 관련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FSI 21 결과에 동의
 - 14) FSI 21 보고서의 전반적인 승인
- (resolution MSC.145(77)) 등에 대한 통일 해석에 관한 MSC circular 초안의 승인 (approve)을 요청함
- 2) 해석사항 1번(PSPC 4, table 1의 3.4항) 및 3번(2차 표면 준비)을 검토하고 결정해 주기를 요청하며, 모든 선종의 전용 해수 평형수탱크 및 벌크캐리어의 이중선측구역에 대한 보호도장 성능기준에 관한 통일해석의 승인을 요청함
 - 3) 구명정 추락방지장치(fall preventer devices)에 관한 통일해석 MSC circular 초안의 승인을 요청함
 - 4) SOLAS II-1/26.3규칙에 관한 통일해석 MSC circular 초안의 승인을 요청함
 - 5) LSA Code 1.1.4항⁴⁾에 관한 통일해석 MSC circular 초안의 승인을 요청함
 - 6) “구명정 및 구조정의 정기적 서비스 및 정비 요건”에 관한 MSC resolution 초안의 6.2.3 항을 검토하고 결정해 주기 바람
 - [6.2.3 If the annual examination and checks required under 6.2.4 to 6.2.7 cannot be carried out for practical reasons, the Administration may allow an extension which is not normally longer than three months from the due date]
 - 7) “구명정 및 구조정의 정기적 서비스 및 정비 요건”에 관한 MSC resolution 초안을 MSC 93차에서 관련 SOLAS 개정안과 함께 채택 하기 위하여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8) MSC 93에서 관련 MSC resolution의 채택과
- 논의내용 및 결과
- 위원회는 FSI 21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승인함
6.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 결과보고
- 의제내용
- 2013년 3월 18부터 3월 22일까지 개최된 제57차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 57)의 보고서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MSC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1) SOLAS II-1, XII, 검사를 위한 접근수단에 대한 기술규정(resolution MSC.158(78)) 및 벌크캐리어의 수위감지장치의 성능기준

4) “자유낙하인증 높이”라 함은 구명정이 진수형태로 있을 때 잔잔한 수면 상에서 구명정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 측정된 높이로서 구명정이 승인되는 최대진수높이를 말한다.

- 함께 승인될 수 있도록 “구명정을 이용한 퇴선 훈련시의 안전에 관한 지침” MSC circular 초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9) MSC 93에서 채택하기 위한 SOLAS III장 개정초안의 승인을 요청함(보고서 6.9 및 부속서 9)
- 10) 선박 구명설비 요건의 프레임워크에 관한 goal-based 지침의 일부분들을 COMSAR, FP 및 STW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11) 구명동의(lifejacket)에 부착되는 구명동의용 표시등(lights)의 위치 및 작동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사항을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12) 시간이 부족하여 의제 9번(방수복의 보온 성능을 위한 LSA Code 개정안의 개발) 및 의제 10번(자유부양 능력을 가진 자유낙하 구명정에 대한 LSA Code 개정안의 개발)은 DE 58차로 미룬 것에 대하여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13) 강제 Polar Code 개발 진척 상황을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14) 극지방 해역의 해도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항해에 미치는 영향 (DE 57/11/24)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action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15) 제110차 이사회의 endorsement를 받도록 제출하기 위하여 Polar Code 회기간 작업반 회의를 2013년 가을에 개최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16)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12명을 초과하는 산업인력(industrial personnel)이 승선하는 선박을 위한 지침”에 관한 새로운 작업(new output)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2014~2015년 biennial agenda 및 DE 58차의 잠정의제로 포함
- 17) MSC 93차 채택을 목표로 구명동의의 기준 시험장비⁵⁾(Reference Test Device, RTD)에 관한 LSA Code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함
- 18) 구명설비의 시험에 관한 개정된 권고(resolution MSC.81(70))의 개정안을 MSC 93에서 채택하기 위하여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19) MSC 93에서 관련 LSA Code 및 구명설비의 시험에 관한 개정된 권고의 개정안 채택 시 최종 승인을 위하여 “완성된 성인용 RTD의 구조를 유효화하기 위한 지침”에 관한 MSC circular 초안의 승인을 요청함
- 20) 시간의 부족으로 의제 14(WIG 선에 대한 지침의 개발) 및 의제 15(팽창식 구명뗏목 서비스 스테이션의 승인을 위한 조건에 대한 권고(resolution A.761(18)의 개정)를 DE 58차에서 검토하기로 연기한 것에 대하여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21) 전문위원회가 하역설비 및 윈치에 관한 요건의 개발과 관련하여 ILO와 협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통하여 현재의 진행상황을 ILO에 통보하고 ILO의 참여를 요청한 사항을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22) 시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의제 19(일반화물선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 검토를 차기 회의인 DE 58로 연기한 것을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23) 조타기 시험 요건에 관한 SOLAS II-1/29 규칙의 개정안을 MSC 93에서의 채택을

5) LSA Code 2.2.1.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로서, 형식승인 시에 구명조끼의 수중성능(in-water performance)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으로 사용되는 적절한 크기의 표준 규격 구명조끼를 말한다. Adult RTD, Child RTD, Infant RTD 등이 있다.

위하여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24) BLG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한 IGC Code 개정안의 일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BLG 17/9 및 BLG 17/WP.6 문서에 포함된 개정안에 동의한 사실을 note해 줄 것을 요청함
- 25) 전문위원회가 동의한 2011 ESP Code의 정기적 최신화에 관한 절차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
- 26) 2011 ESP Code의 Part A 및 B의 부속서 A 및 B의 1.3.3항의 꺾쇠괄호 안에 있는 새로운 문구를 검토를 요청하며, Code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함
- 27) 전문위원회 보고서의 승인을 요청함

○ 논의내용 및 결과

- SOLAS II-1, XII, 검사를 위한 접근수단에 대한 기술규정(resolution MSC.158(78)) 및 벌크캐리어의 수위감지장치의 성능기준(resolution MSC.145(77)) 등에 대한 통일해석을 MSC.1/Circ.1465로 승인함
- 추락방지장치(fall preventer device, MSC.1/Circ.1392 및 MSC.1/Circ.1327)에 대한 통일해석을 MSC.1/Circ.1466 으로 승인함
- SOLAS II-1/26.3 규칙과 관련하여 추진시스템의 정상작동을 위한 연료유 펌프의 이중화에 관한 통일해석을 MSC.1/Circ.1467 로 승인함
- 자유낙하구명정의 최대 진수 높이에 관한 LSA Code 1.1.4항 관련 통일해석을 MSC.1/Circ.1468로 승인함
- “구명정 및 구조정의 정기적 서비스 및 정비 요건”에 관한 MSC resolution 초안의 6.2.3항의 꺾쇠괄호와 관련하여 해당 항목 전체를 삭제하기로 함

7.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전문위원회(STW) 결과 보고

○ 의제내용

- 2013년 4월 29일~5월 3일까지 개최된 제44차 선원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STW 44)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 1) A28차의 채택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해양 구조물(Mobile Offshore Units, MOU) 근무자 훈련을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결의서 초안 승인
- 2) Polar Code에 대한 교육 및 증서 규정은 STCW 제5장에 삽입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 및 사무국에서 이러한 사실을 DE 58차에 전달
- 3) IMO 강제협약 이행 및 감사제도 코드를 만들기 위한 STCW Code Part A의 개정안 승인
- 4)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교육 및 증서 규정은 STCW 제5장에 삽입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 및 사무국에서 이러한 사실을 BLG 18차에 전달
- 5) 색각(Color Vision) 검사에 대한 임시 지침서(STCW.7) 승인
- 6) 선원에 대한 최소한의 시각 검사 기준과 관련된 STCW Code Part A 개정안 승인

○ 논의내용 및 결과

- STW 44차에서 승인을 요청한 사안들은 당 전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없이 승인됨